

모아plus 추가금전신탁 (채권형) 제()호(구 외환은행)개정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비 고
<p>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등록 또는 신탁의 표시나 기재 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p>	<p>제10조(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u>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합니다.</u></p>	문구정비
<p>제14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보호 및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p>	<p>제14조(판매금액 및 판매기간) 이 신탁은 판매금액 및 판매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p>	문구삭제
<p>제16조(기준가격의 계산)</p> <p>① ~ ④ (생략)</p> <p>⑤ 이 신탁의 기준가격은 매 년 초일에 기준가 격을 1,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시작하고 이때 적용할 수익권 총좌수(이하 '조정좌수'라 한다) 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 출한 수익권총좌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 용합니다.</p>	<p>제16조(기준가격의 계산)</p> <p>① ~ ④ (좌 동)</p> <p>⑤ 삭제</p>	항삭제

현행	개정안	비고
<p>조정 좌수 = 매년 초에 적용할 당초 좌수 x (매년 초일에 적용할 당초 기준가격 / 1,000)</p> <p>제17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p> <p>1.채권 가.~나. (생략)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채권가격 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생략</p> <p>2.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을 발행한 위탁회사가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p>	<p>제17조(신탁재산의 평가) ①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합니다.</p> <p>1.채권 가.~나. (생략) 다. 비상장채권의 경우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263조에 따른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u>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 라.생략</p> <p>2. <u>집합투자증권</u> <u>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회사가</u> 공고·게시하는 평가일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다만 평가 당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한 최종가격</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정정</p> <p>용어정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3~4생략</p> <p>5. 외화표시유가증권 외화표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상기 1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p> <p>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p> <p>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채권상각준비금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p> <p>제18조(신탁재산의 운용)</p> <p>① 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p>	<p>3.~4.생략</p> <p>5. <u>외화증권</u> <u>외화증권</u>에 대하여는 상기 1호의 방법을 준용하되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각 외화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p> <p>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자산 : 취득가액에 경과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의 반영방법 및 상이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에 대한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u>한국금융투자협회</u>가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p> <p>③ 이 신탁에서 시가평가 적용을 받지 않는 자산에 대하여는 <u>금융위원회</u>에서 규정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u>채권평가충당금</u>을 적립하고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p> <p>제18조(신탁재산의 운용)</p> <p>①이 신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합니다.</p>	<p>용어정비</p> <p>용어정비</p> <p>용어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1. 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0%이내로 합니다. 단,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내로 합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제1호의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응모·인수·매입을 말합니다.</p> <p>1.국채·공채</p> <p>2.은행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기관이 발행하거나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채권</p> <p>3.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p> <p>4.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p> <p>5.~7. 생략</p>	<p>1. 채권(<u>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u>),채권관련 파생상품, 대출,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100%이내로 합니다. 단, 대출에의 운용은 신탁재산의 50%이내로 합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 제1호의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및 사모사채 포함)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응모·인수·매입을 말합니다.</p> <p>1. <u>국채증권</u></p> <p>2. <u>지방채증권</u></p> <p>3. <u>특수채증권</u></p> <p>4. <u>사채권</u></p> <p>5.~7. 생략</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용어정비</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정정</p>

현행	개정안	비고
<p>8.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p> <p>④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합니다.</p> <p>1.보증부 사모사채의 경우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 및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p>	<p>8. <u>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외화증권</u></p> <p>④ 제3항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권중 이 신탁에서 편입할 수 있는 사채권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한합니다. <u>다만,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사채권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u></p> <p><u>1.보증사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u></p> <p><u>가. 은행</u> <u>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u> <u>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u> <u>라. 보험회사</u> <u>마. 투자매매업자</u> <u>바. 증권금융회사</u> <u>사. 종합금융회사</u></p>	<p>문구추가</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2. 제3항제3호의 사채권중 무보증사모사채에 대하여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없다.</p> <p>⑤ 제3항 내지 제4항의 “사모사채” 라 함은 증</p>	<p>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지급을 보증한 보증사채권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한 것을 포함한다)</p> <p>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p> <p>2.무보증사채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중에서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인수하는 경우 또는 신용평가업자의 업무정지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이상의 자로부터 해당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평가를 받은 것. 다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경우 2이상의 신용평가업자(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을 포함)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p> <p>⑤ 제3항 “사모사채” 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p>

현 행	개정안	비 고
<p>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사채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에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p> <p>1.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하는 채권</p> <p>2. 신탁재산 편입일 기준으로 1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p> <p>⑥ 제1항제1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로 합니다.</p> <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용대출</p> <p>2. 은행법 제22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신용대출</p> <p>3.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p> <p>4.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p> <p>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p>	<p><u>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모의 방법으로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사채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채권을 말합니다.</u></p> <p>1.~2. (삭제)</p> <p>⑥ 제1항제1호의 "대출에의 운용"은 다음 각호의 범위로 합니다.</p> <p>1. <u>신용대출</u></p> <p>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p> <p>3.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p> <p>4. <u>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u></p>	<p>문구 및 용어정비</p> <p>문구 정정 및 삭제</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p> <p>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신용보증서</p> <p>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p> <p>⑦ 생략</p> <p>⑧ 제1항 제1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p> <p>1.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p> <p>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p>	<p>가. 은행</p> <p>나. <u>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u></p> <p>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출</p> <p>⑦ 생략</p> <p>⑧ 제1항 제1호의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에의 운용"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p> <p>1. 당해 신탁회사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 다만,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2. <u>자본시장법상</u>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의 대여</p> <p>3. <u>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u></p>	<p>문구 및 용어정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또는 법인이 발행한 어음</p> <p>4. 증권거래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의 매매</p> <p>5.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전문금융업 법 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를 관리하는 계정으로 부터 발생한 채권의 인수</p> <p>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p> <p>7.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p> <p>8.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p> <p>9.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한 법인이 발행하는 어음</p>	<p><u>어음</u></p> <p><u>가.상장법인</u></p> <p><u>나.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u></p> <p>4.<u>환매조건부매수(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u></p> <p>5.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u></p> <p><u>가. 은행</u></p> <p><u>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u></p> <p><u>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u></p> <p><u>라. 증권금융회사</u></p> <p><u>마. 종합금융회사</u></p> <p><u>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u></p> <p><u>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u></p> <p><u>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u></p> <p><u>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u></p> <p><u>차.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u></p>	<p>문구 및 용어정비</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p> <p>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p> <p>12.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금감위에서 승인을 얻은 방법</p> <p>⑨ 제1항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이란 다음 각호로 합니다.</p> <p>1.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p> <p>2.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p> <p>3.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선물거래</p> <p>제21조(신탁보수)</p> <p>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p>	<p><u>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u></p> <p><u>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u></p> <p><u>7.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u></p> <p><u>8. 집합투자증권</u></p> <p>9.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또는 <u>금융위원회</u>에서 승인을 얻은 방법</p> <p>⑨ <u>제1항 제1호의 "파생상품에의 운용"이란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u></p> <p>제21조(신탁보수)</p> <p>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p>폐지법령등에 근거한 문구 및 용어정비</p>

현 행	개정안	비 고
<p>평균잔액의 연 1.2%로 합니다.</p> <p>제23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 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제27조(펀드의 해지)</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펀드를 해지할 때에는 이를</p>	<p>평균잔액의 연 0.6%로 합니다.</p> <p>제23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u>사전에 안내한</u>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 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u>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u>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③ <u>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는 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치또는 게시합니다.</u></p> <p>제27조(신탁의 해지)</p> <p>① (동 일)</p> <p>② <u>제1항에 따라 신탁을 해지할 때에는 은행은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u></p>	<p>보수정정</p> <p>문구정비</p> <p>문구정비</p> <p>항신설</p> <p>문구정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영업점에 1개월동안 게시하고 위탁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2이상의 주요 일간신문에 광고하기로 합니다. 통지나 광고후 1개월이내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p> <p>제29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② 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p>	<p><u>거래를 위한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 이상비치 또는 게시하고,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u></p> <p>제29조(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증서·거래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했을 때는 <u>지체 없이 신고</u>하여야 합니다.</p> <p>② 거래처가 인감(또는 서명)·비밀번호·성명·상호·대표자·대리인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u>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은행에 신고</u>하여야 합니다.</p> <p>③ 삭제</p>	<p></p> <p>문구정정</p> <p>문구정정</p> <p>항삭제</p>

현 행	개정안	비 고
<p>처리하여야 합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서면으로 해야 합니다.</p> <p>제33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정보의 제공요청자를 본인으로 간주하여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제34조(통지방법)</p> <p>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통지합니다.</p> <p>②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송기간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제33조(거래정보 제공)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포함),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은행은 명의인, 계좌번호 및 <u>비밀번호의 일치 여부 등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u> 입금인, 입금금액, 신탁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제34조(통지방법)</p> <p>① 은행은 거래처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된 연락처로 서면이나 전화 등 <u>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u> 통지합니다</p> <p>② <u>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u></p>	<p>문구수정</p> <p>문구추가</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신설></p> <p>제35조(신탁금의 시효)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p> <p>제36조(약관변경 등)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신탁상품별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하고, 이 기간안에 거래처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p>	<p>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p> <p>③ <u>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29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u></p> <p>제35조 삭제</p> <p>제35조(약관의 변경 등) ① <u>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u></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법령이나 신탁업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p> <p>③<신 설></p>	<p>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p> <p>② 제1항의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p>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p>	<p>문구정정</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④<신 설></p>	<p>“<u>봅니다</u>”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u>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날부터 변경 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u></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p>⑤<신 설></p>	<p>⑤ <u>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거래처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u></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p>제37조(면책) ① (생 략)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p>제36조(면책) ① (좌 동) ② 은행은 전산통신기기 등의 이용이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누설됨으로써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계좌번호,</p>	<p>공정위 시정사항 반영</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③ 은행은 제19조 제1항,제3항의 신고 및 절차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p> <p>④ <신 설></p>	<p><u>비밀번호 등의 누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사용하여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u></p> <p>③ <u>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 29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u></p> <p>④ <u>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카드,비밀번호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u></p>	<p>문구정정</p> <p>공정위시정사항</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⑤<신 설></p> <p>제38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신탁업감독 규정 및 은행 내규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p> <p>제39조(관할법원) 은행,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p> <p>제40조(공시)</p>	<p>다.</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p> <p>제37조(관계법령 등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 감독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p> <p>제38조(관할법원) 은행, 거래처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제39조(공시)</p>	<p>공정위시정사항</p> <p>문구삭제</p> <p>문구수정</p>

현 행	개정안	비 고
<p>①~② <생 략> ③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거래처(다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거래처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합니다.</p>	<p>①~② <좌 동> ③ 신탁재산운용보고서를 매년 <u>매분기별로</u> 거래처(다만, 통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래처는 제외)에게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거래처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합니다.</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 01. 01.부터 시행합니다.</p>	<p>문구수정</p>